

# 예산총칙

2018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54,936,379	19,648,091
일반회계	613,522,000	18,405,660
특별회계	41,414,379	1,242,431
기타특별회계	41,414,379	1,242,431
의료급여기금	1,187,280	35,618
주차장	38,536,499	1,156,095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60,310	4,809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618,895	18,567
기반시설	27,735	832
지하수관리	871,365	26,14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2,295	369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226,76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의존재원 표시

국비→국,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 기금→기, 시비→시, 특별교부세→교,  
특별조정교부금→특